

의안번호	제671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420회)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8월 23일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1
----------	-----

발의연월일 : 2024년 8월 23일

발 의 자 : 박재주, 최정훈, 김국기,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권고(의안번호 제2021-222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 조례의 위임근거와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용어의 정비를 통해 상위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임근거 명확화(안 제1조)
 -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함을 명시
- 용어 정비(안 제2조, 제5조)
 - “선택적” 복지제도의 용어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정비
- 후생복지사업 명확화(안 제7조)

-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규정 삭제
- 건강검진비, 단체보험비, 예방접종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근거규정 명확화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인사혁신과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택적”을 “맞춤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선택적”을 각각 “맞춤형”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4.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6.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

7.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생활보장을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8.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9. 그 밖의 직원 복지·후생과 관련된 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u>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u>충청북도</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충청북도 <u>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u> 을 말한다.	1. ----- -- <u>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u>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 <u>선택적 복지제도</u> ”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 <u>맞춤형</u> ----- ----- ----- ----- -----.
제5조(<u>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u>)	제5조(<u>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u>)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	① ----- -----

현행	개정안
시킬 수 있도록 <u>선택적</u>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u>선택적</u>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u>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u> 2. <u>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u> 3. <u>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u> 4. <u>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u> 5. <u>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u> 6. <u>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u> 7. <u>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u>	----- <u>맞춤형</u> ----- -----. ② <u>맞춤형</u> ----- -----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u>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u> 2. <u>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u> 3. <u>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u> 4. <u>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u> 5. <u>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u> 6. <u>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u> 7. <u>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생활보장을 위한 건강</u>

현 행	개 정 안
<u>격려금품 지급</u> <u>8. 그 밖의 직원 복지·후생과 관</u> <u>련된 사항 등</u>	<u>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u> <u>8.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u> <u>지원</u> <u>9. 그 밖의 직원 복지·후생과</u> <u>관련된 사항 등</u>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3. 19.]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삭제 <2013. 6. 21.>

3. 삭제 <2013. 6. 21.>

4. 삭제 <2013. 6. 21.>

5. 삭제 <2013. 6. 21.>

6. 삭제 <2013. 6. 21.>

7. 삭제 <2013. 6. 21.>

8. “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위임근거와 후생복지사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사유에 해당함.